

의안번호	제 23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407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유상용 · 김현문 · 이정범
박병천 · 박용규 · 박재주
이욱희 의원

1. 제안 이유

최근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까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마약 확산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예방 교육이나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체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유해약물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 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함 (안 제6조)
- 다. 유해약물 예방교육 위탁 사항을 보완 함 (안 제7조)
- 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약물을” 을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 를 “연 1회 이상 실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계하여” 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u>유해약물</u>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u>실시</u>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u>연계하여</u>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제7조(위탁)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u>을 -----.</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 ----- <u>연 1회 이상 실시</u>-----.</p> <p>② ----- ----- -- <u>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신 설>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9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학생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학생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7조(위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 2) 2022학년도 MOU체결 등 외부강사에 의한 학생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실적(총 284회)

나. 추계결과: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80,000천원(연 36,000천원)

- ※ 2023년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외부강사에 의한 수업률 증가 예상으로 추정치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